

부천시도시관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 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1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4년 12월 14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과장 오응완)

□ 제정이유

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

(자연녹지지역 → 자연녹지지역, 집단취락지구)

- 부천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에 대하여 구역내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주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- 『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』 및 『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(안) 수립지침』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■ 용도지역, 구역 결정(변경)

- 변경없음

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

- 취락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치	층제내수한용	면적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합 계						164,627		
신설	1	양지나사렛지구	집단취락지구	소사구 범박동 6-1번지 일원	3층이하	68,577		
신설	2	옥련지구	집단취락지구	옥길동 490-2번지 일원	"	96,050		

- 건축규모 : 건폐율 40%이하, 용적률 100%이하, 층수 3층이하
(단, 연면적300m²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60%이하, 용적률 300%이하, 층수 3층이하)

-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70%지원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

-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

□ 근거법령

- 『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』
-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7조』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는 지원되는지 ?○ 시비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취락지구에 한하여 70%이내에서 지원될것임.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보면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**부천시 도시관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
변경안에대한의견서**

의안번호	제321호	안건명	부천시도시관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 변경안에대한의견안
제출자	부천시장	의결 연월일	제116회 부천시의회 (정례회) 제4차 본회의 (2004. 12. 23)

**부천시도시관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
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**

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은 소사구 범박동 6-1번지 일원, 옥길동 490-2 일원 등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2개 지구에 대하여 건폐율 40%이하, 용적률 100%이하, 층수 3층 이하의 건축규모가 가능 하도록 하고, 단, 연면적이 300㎡이하 일 경우에는는 건폐율 60%이하, 용적률 300%이하, 층수 3층 이하로 건축 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70%가 지원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며, 공공사업에 의해 이축되는 경우 이축토지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,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요구된 민원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임.

2004년 12월 23일

부천시의회 의장

부천시도시관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변경안

의안 번호	제321호
의결 년월일	2004.12.23 (제116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1. 23.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사유

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

(자연녹지지역 → 자연녹지지역, 집단취락지구)

- 부천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에 대하여 구역내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주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- 『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』 및 『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(안) 수립지침』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■ 용도지역, 구역 결정(변경)

○ 변경없음

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

○ 취락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치	층제내수한용	면적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합						164,627		
신설	1	양지나사렛지구	집단취락지구	소사구 범박동 6-1번지 일원	3층이하	68,577		
신설	2	옥련지구	집단취락지구	옥길동 490-2번지 일원	"	96,050		

○ 건축규모 : 건폐율 40%이하, 용적률 100%이하, 층수 3층이하
(단, 연면적300㎡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60%이하, 용적률 300%이하, 층수 3층이하)

○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70%지원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

○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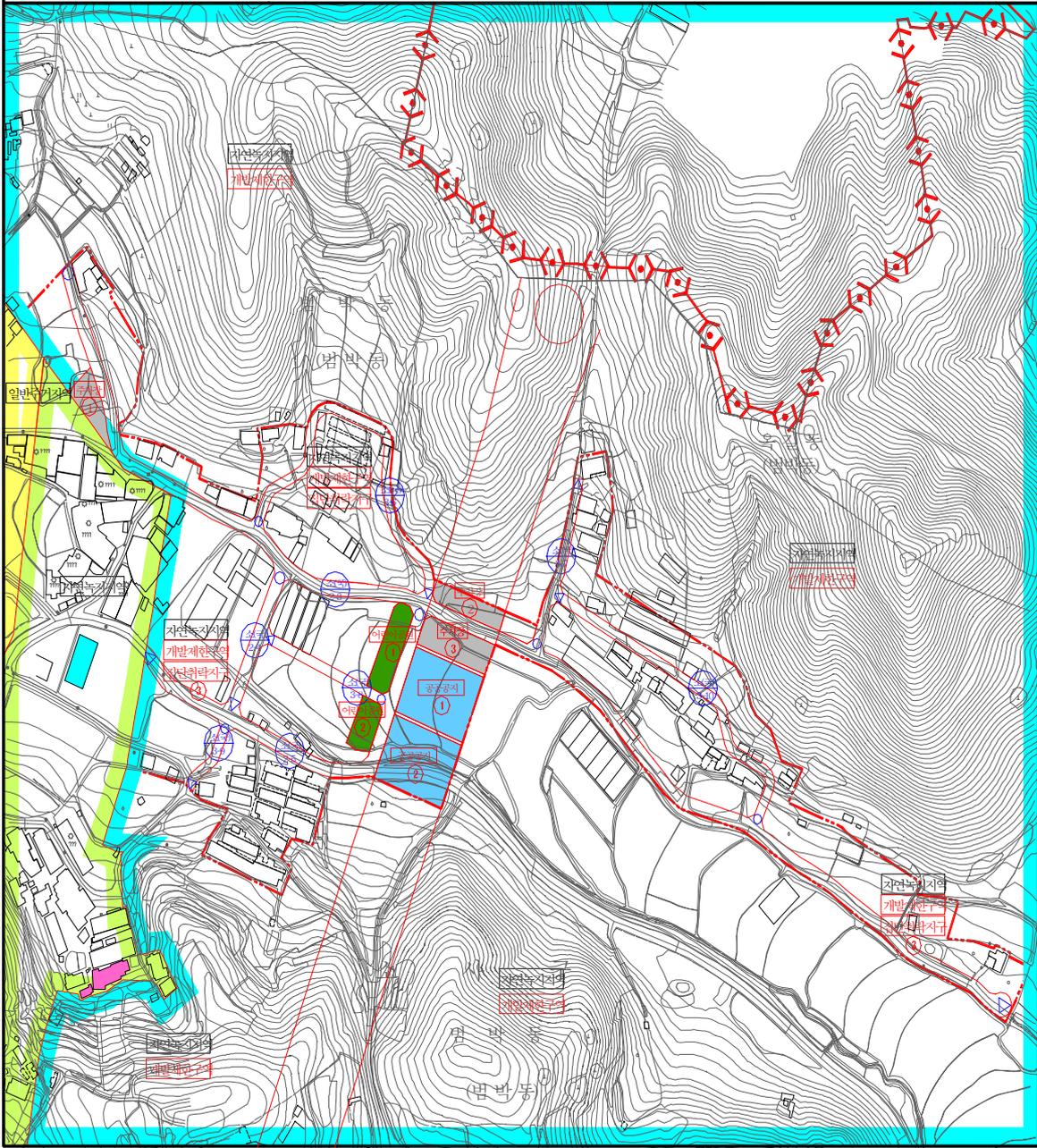
□ 근거법령

○ 『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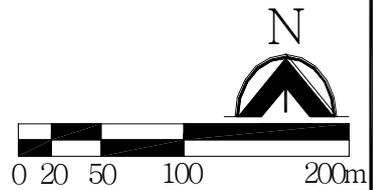
○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7조』

도시관리계획(안)도

(양지나사렛 지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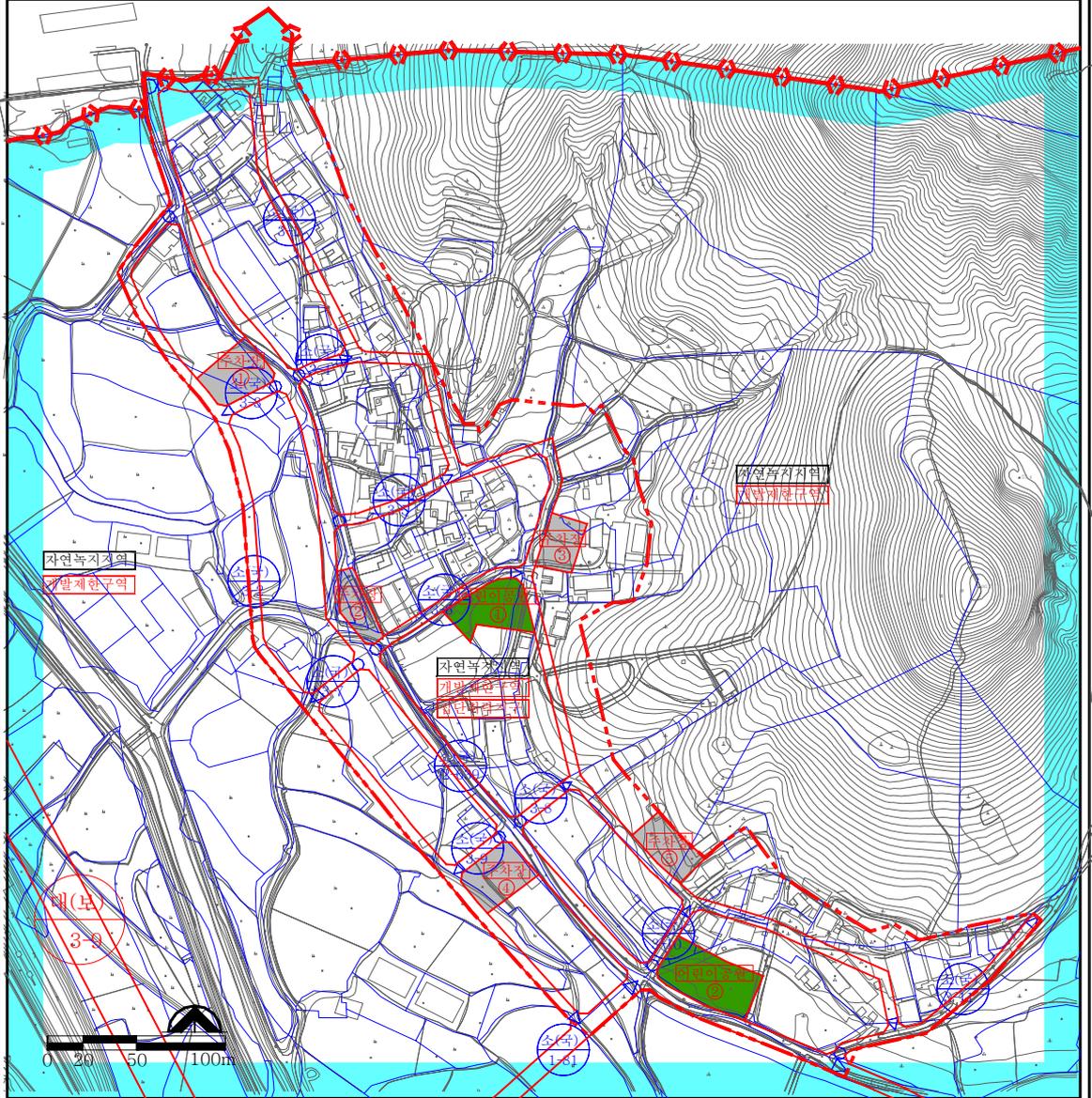
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| 취락지구 구역계 |  | 도 로 |
|  | 일반주거지역 |  | 주 차 장 |
|  | 자연녹지지역 |  | 어린이공원 |
|  | 개발제한구역 |  | 공 공 공 지 |



도시관리계획(안)도

(옥련지구)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취락지구 구역계 |  주 차 장 |
|  개발제한구역 |  어린이공원 |
|  도 로 | |

